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6. 25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공항안전환경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과장 방현하, 주무관 홍광표 ·☎ (044) 201-4347, 4349
보 도 일 시		2018년 6월 25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5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

“공항 구역 內 안전사고 줄인다”

공항 보호구역 內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공항시설법령 개정안 시행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활주로·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·사람·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「공항시설법」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,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*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.
 - * (최근 사고 사례) ① 스텝카와 항공기간 충돌(1.20), ② 승합차와 승객수송버스 간 충돌(3.3), ③ 승합차와 터그카 간 충돌(4.29)
- 우선,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·장비를 사용 할 것
 -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,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
 -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·정차를 할 것
 -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

□ 위의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·보수, 항공기 급유, 수하물 하역, 항공기 정비, 입·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*이며,

* 김포 등 15개 공항에서 총 16,491대의 차량·장비를 사용하고, 21,045명의 조업자 종사

○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하여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,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,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공항안전환경과 홍광표 주무관 (☎ 044-201-434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